

# 고 발 장

## 고 발 인

1. 안 진 결<sup>1)</sup>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2. 정 용 건<sup>2)</sup>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81-17, 2층

3. 정 혜 경<sup>3)</sup>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민주노총

## 피고발인

1. 이 재 용 (주식회사 삼성전자 부회장)

2. 박 상 진 (주식회사 삼성전자 사장)

3. 박 근 혜 (대통령)

4. 최 순 실 (대통령의 이른 바 ‘비선 실세’로 알려진 자,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

1)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3)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이상 피고발인 1.과 2.), 뇌물수수죄 등(이상 피고발인 3.과 4.)으로 고발합니다.

## 고 발 내 용

### 1. 고발에 들어가면서

채근담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한때가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권력과 세력에 빌붙은 자는 만고에 처량해진다. 한때 외롭고 쓸쓸할 지라도 만고의 처량함을 취하지 말라.

(棲守道德者, 寂寞一時. 依阿權勢者, 淒涼萬古. 寧受一時之寂寞, 毋取萬古之淒涼.)”

한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을 쥐고 흔들었던 우병우 전 검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생각하면서 검찰에게 전하고 싶은 경구입니다. 냉정한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권력과 부도 올바른 길을 걷는 것보다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국민은 그가 가진 권력 중 일부를 대의제 대표기관인 대통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그 위임을 받아 행정부를 구성하고, 검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선출직은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검사 역시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도 2016년 11월 현재 국민은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수호의무를 진 대통령이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사유물처럼 생각한 나머지 최순실이라는 측근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검찰 역시 국민이 띄워 준 배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데도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행정부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검찰총장만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개별 검사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독립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검사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누구든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고,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홀로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의 전제는 ‘검사에게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는 처벌, 즉 성역 없는 수사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검사는 누구에게 두 손을 모으거나 고개를 숙여서도 안 됩니다. 그게 국민이 검찰이라는 배를 띄운 이유입니다.

지금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뇌물을 통해 사고 팔았다’는 의혹의 대상입니다. 피고발인 이재용은 최대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로 최고의 경제권력자이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정치권력자입니다.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이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야 할 정치권력을 특정인의 경제권력 확장과 옹호를 위해 사고 팔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보면, 최고경제권력과 최고정치권력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최고정치권력에 기생한 제3자의 ‘호가호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최고경제권력이 뇌물을 통해 정치권력을 적

극적으로 매수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주말에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뇌물을 통한 정치권력의 매매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뇌물 사건의 몸통인 피고발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그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가 아닌, 진실을 덮고 진실을 잘라내는 수사가 될 경우,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검찰의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뇌물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수사과 기소가 필요합니다. 만일 검찰이 진실을 찾는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덮는 역할에 앞장 설 경우, 주권자 국민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검찰’로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정도를 걷는 검사로서 국민의 신뢰속에 거듭나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혼 없는 관료가 아닌 법률가로서의 양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2. 범죄사실**

### **가. 피고발인들의 지위**

- (1) 피고발인 1. 이재용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아들로써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 함)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2) 피고발인 2. 박상진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회사의 임원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이하 피고발인 1. 및 2.를 통칭하여 ‘피고발인 이재용 등’이라 합니다.)
- (3) 피고발인 3.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헌법 제66조 제2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국민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 (4) 피고발인 4. 최순실은 피고발인3 박근혜 대통령과의 수십 년간 친형제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지인을 피고발인 박근혜의 국회의원 당선 초기부터 비서진으로 채용하게 하여 국회 의정활동 단계나 각종 공직 선거, 당권 선거, 주요한 결정 등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하여 왔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최 근까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고, 대통령 해외순방 시 동행하고, 대통령의 스케줄을 사적으로 관리하며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비롯한 정부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관장하거나 관장할 수 있는 각종 인사에 개입하여 자기 사람을 추천·관철하여 오는 등,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여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입니다.

#### **나. 고발인들의 지난 고발과 그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

- (1) 고발인들은 지난 2016. 6. 16. 피고발인 이재용에 대하여, 제일모직(주)와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피고발인 이재용이 기업집

단 ‘삼성’의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과 교감을 이루거나 공모하여 구 삼성물산(주)<sup>4)</sup>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정하고, 조정된 주가를 기반으로 산정된 합병비율(0.35:1)을 적용하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통하여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구 삼성물산(주)과 주주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귀 청 조사1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고발 이후 별 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는 바,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2) 한편 고발인 1. 이 소속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11. 4. 대통령 박근혜와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 이하 “최순실”이라 함),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귀 청에 고발하였습니다.(뇌물죄를 중심으로 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의 수사는 뇌물죄를 제외한 직권남용 정도로 축소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뇌물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3) 그런데 위 고발 이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하여 피고발인 이재용 등이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발인 박근혜와 그 최측근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구체적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

---

4) 양 회사의 합병에 따라 제일모직(주)를 존속법인으로, 삼성물산(주)는 소멸법인이 되었는데, 존속법인 제일모직은 합병 직후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소멸된 삼성물산을 ‘구 삼성물산’으로, 합병으로 존속한 삼성물산을 ‘현 삼성물산’이라 하겠습니다.

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다.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이 사건 합병 과정 및 피고발인 이재용 등의 피고발인 박근혜 및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에 관한 주요 사실**

-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 2015. 3.경 : 피고발인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sup>5)</sup>
-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 대 약 0.35)
-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서의 합병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sup>6)</sup>을 발표
-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5)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

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38053>



## 권고

-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sup>7)</sup>
-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sup>8)</sup>
- ▶ 2015.7.1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sup>9)</sup>.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sup>10)</sup>
-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피고발인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 2015.8. : 피고발인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sup>11)</sup>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

7) 이목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사실조사에 근거함. 삼성물산 합병 전 이재용과 국민연금의 만남, 논란 계속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겨”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44721>

9)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텍스포츠로 바꿈

10)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깍뎀기 회사’” (2016. 10. 18.자)

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sup>12)</sup> 한편 피고발인 박상진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 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

-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sup>13)</sup>.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음<sup>14)</sup>.

<미르 / K스포츠 입금액 및 입금일시>

입금명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남부금액	일시	남부금액	일시
현대자동차	68	10/26	43	12/31
삼성물산	15	10/26		
삼성전자	60	10/26		
삼성화재	25	10/26	29	12/31
삼성생명	25	10/26	30	1/11
세일기획			10	1/12
에스원			10	12/31
이마트			3.5	12/31
신세계			1.5	12/31
포스코	30	10/26		
(주)GS	26	10/26	16	12/31
LG그룹			30	1/11
(주)LG	48	10/26		
대원산업	6	10/26		
SK	68	10/26		
SK텔레콤			21.5	1/8
SK종합화학			21.5	12/31
롯데엔터테인먼트	28	10/26		
롯데제과			17	12/31
한화	15	10/26		
한화생명			10	12/24
(주)두산	7	10/26		
두산중공업			4	12/28
부영주택			3	12/31
KT	11	10/26	7	12/31
대한항공	10	10/26		
CJ E&M	8	10/26		
CJ 제일제당			5	12/31
아시아나항공	7	10/26		
아모레퍼시픽	2	10/26	1	12/31
LS	10	10/25	6	12/31
합계	486		380	

단위 : 억원

11)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id=N1003874450&plink=REL&cooper=SBSNEWSEND](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id=N1003874450&plink=REL&cooper=SBSNEWSEND)

12)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13)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14)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 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부영, 롯데, 포스코 등일 가능성이 큼<sup>15)</sup>
- ▶ 2016.2.25. :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함. (공익법인은 면세로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 면제됨에도 공익사업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계열사 주식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그러나 당국은 과세하지 아니함)
- ▶ 2016.3.14.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촉구(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음)

---

15)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 라.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 (1) 피고발인 이재용 등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다각도의 불법적 로비정황

피고발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아들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건희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삼성그룹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2015. 7. 17.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이 사건 합병을 통하여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고발인들의 지난 고발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이전, 피고발인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으며,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피고발인 이재용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결국 삼성전자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발인 이재용은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 합병가액을 낮게 산정하기 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이사들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사업 실적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등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 6. 경 (구) 삼성물산(주)의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이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공방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발인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

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발인 이재용이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나기까지 하는 등 여러 경로로 로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은 하나은행 부행장을 지내는 등 금융인으로 기금 운용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1.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되었는바, 홍완선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구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정치권과 인연으로 주목받았던 사람입니다<sup>16)</sup>.

(가)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직후까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합병 승인 이사회에서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상승하자,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 및 합병 반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였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이 사건 합병이 피고발인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

---

16) 뉴스핌 “실세 최경환 부총리, 인사 영향력에 관가 술렁” (2015. 10. 29.자 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51029000219>

도록 일반적인 투자원칙 및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 즉, 피고발인 이재용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하여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및 그와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기초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행세해온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피고발인 최순실은 과거 피고발인 박근혜의 멘토로 알려진 최태민의 다섯째 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과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사망 후 최태민과의 관계 속에서 피고발인 박근혜가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맡고 있던 시절, 피고발인 최순실은 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이듬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피고발인 박근혜가 은둔 생활을 하던 때부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 때 피고발인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희가 비서실장을 맡아 오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생활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최순실의 재산 축적과정에서 피고발인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하였다는 의혹이 짙은바, 피고발인 박근혜는 피고발인 최순실이 축적한 재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 왔다는 의혹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동일성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요한 사실관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 최순실은 피고발인 박근혜

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대통령의 연설문 등 주요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이를 수정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사실상 피고발인 박근혜와 한 몸이 되어 활동하였던 점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라) 피고발인 박근혜는 2016. 11. 5. 대국민담화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청와대에 들어 온 이후 가족 간의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 (최순실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 박근혜는 최순실이 집권 이후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로 왕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발인 최순실은 공무원인 피고발인 박근혜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피고발인 최순실이 뇌물을 받은 것을 피고발인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 7056 판결 참조). 즉 이에 의하면, 비록 뇌물을 수령한 것은 피고발인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피고발인 박근혜 사이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이는 곧 피고발인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임니다.

## (2) 피고발인 박상진의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가) 한편 피고발인 박상진은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래,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박상진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 3.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피고발인 박상진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삼성은 199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다가 2010년 승마단을 해체한 이후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 게다가 대한승마협회는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회장에 취임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연간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삼성럭비단을 불황을 이유로 2015년 해체했고, 레슬링 종목에 대한 지원도 2012년 마감하고, 삼성 테니스단도 없애는 등, 스포츠단 운영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었으나, 피고발인 박상진의 대한승마협회 회장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최순실, 정유라를 위한 목적으로 승마에 대한 거액의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sup>17)</sup>. 승마만은 회사의 스포츠단에 관한 일반적 방침과 정반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임 회장을 그만두게 하고 승마협회 회장이 된 피고발인 박상진은 승마협회 회장직을 빌미로 대통령 및 그 측근인 피고발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 즉, 피고발인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직을 맡은 직후인 2015. 5.경 피고발인 최순실은 독일에서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 때부터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이 사건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

17) 한겨레,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 정유라 지원 위해 감독 파견 의혹” (2016. 10. 21.자)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66791.html](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66791.html)



(다) 또한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과 같은 날에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하자, 피고발인 박상진은 2015. 8.경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직접 피고발인 최순실을 만나 자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코레스포츠는 같은 시기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발인 박상진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 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 박상진은 2015. 8. 무렵 또는 그 이전에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약 18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약속은 적어도 당시 피고발인 이재용이 이미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로 하였을 것임을 추정케 하며, 그 대가임을 추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 또한 삼성전자는 2015. 9.경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을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의혹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 이재용, 박상진은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병 직후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최

소 35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공여로 인한 피고발인 이재용 등의 이익과 부정한 청탁

(가) 이 사건 합병 전후 하여 이루어진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금품 공여는 삼성그룹 차원의 논의와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발인 박상진의 승마협회 회장 취임 및 그 직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금품 공여는 삼성의 스포츠단 관련 방침과는 동떨어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대통령 및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최측근에 대한 금품공여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 사건 합병이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총수 일가인 피고발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사익적인 목적에서 추진되고 성사되었다는 점, 피고발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총수 이건희의 아들이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삼성그룹 전반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만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볼 때, 피고발인 박상진의 박근혜,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공여는 피고발인 이재용과 공모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이재용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였고, 그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

해 피고발인 박근혜 및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2.18.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였다고 합니다.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부영, 롯데, 포스코 등일 가능성이 큽니다<sup>18)</sup>. 피고발인 이재용이 이와 같이 대통령을 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2. 25. 피고발인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 6. 20.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세청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6. 2. 18. 피고발인 이재용과 피고발인 박근혜의 독대 이후 2016. 3. 1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였음<sup>19)</sup>에도 아무런 과세 조치가 취해지지

18)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3408>

아니하고 있는바, 양 피고발인 사이에 삼성생명공익법인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 **3. 고발이유**

#### **가. 피고발인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박근혜 및 최순실의 뇌물 수수죄 등의 성립**

- (1)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뇌물공여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2) 그런데 이 사건 합병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발인 박상진이 피고발인 박근혜 및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피고발인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고 피고발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피고발인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아들로써 사실상 회사 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뇌물공여행위는 피고발인 이재용, 박상진이 공모하거나 교감을 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3) 그렇다면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형법 제129조에 위반하여,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4) 만일 피고발인 최순실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피고발인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피고발인 박근혜, 같은 최순실은 모두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피고발인 최순실이 위와 같은 부정한 뇌물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나 이에 준하는 용인을 하고 피고발인 이재용으로 하여금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고발인 박근혜, 같은 최순실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그렇지 아니할 경우 피고발인 최순실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sup>20)</sup>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

---

20)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고발인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부탁하였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sup>21)</sup>, 이 사건 뇌물을 제공한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에 따른 뇌물공여죄 또는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따른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피고발인들의 엄벌의 필요성

### (가) 손해의 범위

21)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조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적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참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공소외 2가 그 관시 (지구명 생략)관광지구 내 사업장(수렵장 이름 생략, 수렵장) 이외에는 제주도 혹은 피고인측과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내다가 위 사업장 설치일로부터 약 17년 지난 이 사건 무렵에 이르러 총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3 복지법인의 설립에 출연하게 된 점, (중략) 공소외 3 복지법인의 이사진에는 출연자인 공소외 2측 관계자는 전혀 들어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의 처가 재단 이사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공소외 3 복지법인에 대해 사실상의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0억 원의 복지재단 출연금은 위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도지사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뜻하는 광의의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1) 2016. 6.경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일모직- (구)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 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구 삼성물산(주)가 정한 57,234원보다 약 16.36% 높은 가격입니다. (별첨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20190(병합) 결정문 참조)
- 2) 위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2016. 6. 3.자 보도자료를 통해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을 0.4026:1<sup>22)</sup> 또는 0.5675:1<sup>23)</sup>로 재산정하였습니다. 재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자료1 : 보도자료(제윤경 의원실)]

---

22) 제윤경 의원실은 구 삼성물산(주) 1주당 가격을 64,126원으로 재산정하였는데,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으나, 제윤경 의원실 가격이 더 낮은 가격이므로 피고발인들 에게 불리한 사정이 아니므로 향후 이 가격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 기준일을 '제일모직(주)의 상장일 전일인 2014. 12. 17.'로 조 정하고, 상장일을 기준으로 제일모직(주)의 상장일 종가인 1주당 113,000원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면, 합 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주) 0.567대 제일모직(주) 1로 높아집니다. (64,126원:113,000원= 0.5675:1)

<표 1> 합병비율 1 대 0.3501로 계산할 경우 이재용 일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지분가치

구 분	제일모직 (A)	삼성물산	합병신주 (B)	합병회사 (A+B)	9월15일 증가	지분가치
이재용	31,369,500	-	-	31,369,500	163,000원	5조1132억원
이재용 등 4인 (a)	56,935,800	2,206,110	772,359	57,708,159	163,000원	9조 4064억원
국민연금	6,535,240	17,516,490	6,132,523	12,667,763	163,000원	2조648억원
삼성물산 소액주주	-	89,727,582	31,413,626	31,413,626	163,000원	5조1204억원
전체 주식 (b)	135,000,000	156,217,764	54,691,839	189,691,839	163,000원	30조 9197억원
이재용 등 4인 지분율 (a/b)	42.17%	1.41%		30.42%		

(자료 : 2015.09.02.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동), 국민연금(7월17일자, 투자위원회 회의록), 삼성물산 소액주주(6월11일자, 반기보고서)

<표 2> 합병비율 1 대 0.4026으로 계산할 경우 이재용 일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지분가치

구 분	제일모직(A)	삼성물산	합병신주(B)	합병회사 (A+B)	9월15일 증가	지분가치
이재용	31,369,500			31,369,500	156,244원	4조9013억원
이재용 등 4인 (a)	56,935,800	2,206,110	888,180	57,823,980	156,244원	9조346억원
국민연금	6,535,240	17,516,490	7,052,138	13,587,378	156,244원	2조1229억원
삼성물산 소액주주	-	89,727,582	36,124,325	36,124,325	156,244원	5조6442억원
전체 주식 (b)	135,000,000	156,217,764	62,893,271	197,893,271	156,244원	30조9197억원
이재용 등 4인 지분율 (a/b)	42.17%	1.41%		29.22%		

<표 3> 합병비율 1 대 0.5675로 계산할 경우 이재용 일가, 국민연금,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지분가치

구 분	제일모직(A)	삼성물산	합병신주(B)	합병회사 (A+B)	9월15일 증가	지분가치
이재용	31,369,500			31,369,500	138,248원	4조3367억원
이재용 등 4인 (a)	56,935,800	2,206,110	1,251,967	58,187,767	138,248원	8조443억원
국민연금	6,535,240	17,516,490	9,940,612	16,475,852	138,248원	2조2778억원
삼성물산 소액주주	-	89,727,582	50,920,402	50,920,402	138,248원	7조396억원
전체 주식 (b)	135,000,000	156,217,764	88,653,581	223,653,581	138,248원	30조9197억원
이재용 등 4인 지분율 (a/b)	42.17%	1.41%		26.01%		



3) 재산정한 합병비율(0.4026:1)을 적용하는 경우 이견희 등의 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은 29.22%가 됩니다. 즉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그에 기반을 둔 합병비율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이견희 등은 현 삼성물산(주) 지분율 1.20%<sup>24)</sup>, 약 3,71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반면 구 삼성물산(주) 전체주식의 약 57.4%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은 합병비율이 잘못 책정됨에 따라 1주당 6,892원(64,126원-57,234원)<sup>25)</sup>,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약 5,2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구 삼성물산(주)의 전체주식의 약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4) 나아가 재산정한 합병비율 중 0.5675:1을 적용하는 경우, 이견희 등은 1조 3,621억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고, 그에 반비례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은 각 약 1조9,192억 원, 2,13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 됩니다.

#### (나) 엄벌의 필요성

피고발인 이재용 부자 등은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하였고, 그로써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

---

24)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지분율 30.42%에서 재산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지분율 29.22%를 차감한 지분율

25)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소액주주들은 1주당 9,368원(66,602원-57,234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와 같은 부당한 경영권 세습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피고발인들에게 뇌물거래를 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발인들은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합니다.

#### **나.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9.6.22, 선고, 99도1095 판결)
  
- (2) 피고발인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박상진이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는 삼성전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총수 일가인 피고발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

한 금품공여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뇌물공여라는 범죄 행위는 세계 일류기업인 삼성의 국제적 명성에도 맞지 않고 회사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3) 피고발인 이재용은 피고발인 박상진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상법상 이사로서 자신들의 경영권 보장보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고발인 박상진의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피고발인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개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발인 이재용이 사실상 공모하여 추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엄하게 수사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결국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 소 결

(1) 피고발인 이재용 외 1

(가) 이 사건 합병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 사건 합병이 이견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삼성그룹측도 애써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견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 사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병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그러나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이견희 일가의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등에게도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전자에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일류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재벌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신인도도 떨어뜨림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입니다.

(다)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며, 피고발인 이재용, 박상진과 같은 재벌 총수들과 관계자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6. 11. 12. 피고발인 이재용에 대한 소환은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주말에, 그것도 언론과 국민에게 소환일정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수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면죄부 주기 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 이 사건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총수 일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피고발인 박근혜 외1

피고발인 최순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및 딸 정유라 앞으로 피고발인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부터 35억 원의 뇌물과 이를 합한 총 186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발인 이재용 등은 삼성그룹 3대 세습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의 반대의견, 세계적인 자문기관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인수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따른 합병 반대의견, 시민사회계의 문제제기와 공단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인 고발의 홍완선과 기금운용본부는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초래되는 합병 찬성결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발인 이재용이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며, 2,000여만 명의 국민들의 노후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합병결의 직후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은 피고발인 이재용을 독대하였고,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사장인 피고발인 박상진과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의 피고발인 최순실 측을 방문하고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지원하고 186억 원 상당의 지원 약속을 하여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른바 ‘정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최순실과 그 딸 및 그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현 정부가 피고발인 이재용의 3세 경영세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밖에 볼 수 없고, 피고발인 최순실이 현 대통령인 피고발인 박근혜의 적극적 동의 및 지원 하에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여 온 점, 뇌물을 공여하는 자의 입장에서 피고발인 최순실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곧 현 대통령인 피고발인 박근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는 점, 더욱이 피고발인 박근혜 역시 뇌물 수수 및 약속 과정에서 피고발인 이재용을 독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피고발인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를 가능하게 한 점 및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대통령의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신뢰의 상실, 대통령과 정부 기능의 마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에 미친 심대한 피해와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박근혜, 동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동정범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 (3)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2016. 11.

고발인 안 진 결 (인)

정 용 건 (인)

정 혜 경 (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